

의안번호	제 47 호
의결연월일	2007. 11. 23. (제 141 회)

의결사항

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총무위원장
제출연월일	2007. 11. 16.

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 47 호
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7. 11. 16.
제 출 자 : 총무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2007. 5. 11)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명 “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”를 “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”로 띄어쓰기 함.

나.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82조·제83조 → 제90조·제91조(안 제1조)

다.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의 구성

1) oo의 규정에 의하여 → oo에 따라(안 제1조)

3) oo의 규정에 의한 → oo에 따른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, 제91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

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”를 “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와 제91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과 제2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명 <u>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</u>	제명 <u>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</u> 거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지방자치법</u> 」 제90조와 <u>제91조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4조(전문위원) ① ~ ② (생략) ③ 전문위원은 <u>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</u>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	제4조(전문위원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제1항과 제2항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90조 (사무처 등의 설치) ① 시·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,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.

②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의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, 사무국·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 및 직원(이하 이 절에서 "사무직원"이라 한다)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제91조 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)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.

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·기능직·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.